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93호 2021. 3. 3(수)

거창 행복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규 칙

제1307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제1308호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7

고 시

제2021-40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공 고

제2021-338호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 공고 ····· 11
제2021-339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
제2021-343호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공고 ····· 27
제2021-347호 공시송달 공고 『학동천 정비사업』 ····· 30
제2021-348호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계획 ····· 32
제2021-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40
제2021-353호「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1

제2021-354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제2021-355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6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3월 3일

거창군 규칙 제1307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종전 규칙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u>5퍼센트</u>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u>10퍼센트</u>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7

제출일자	2021. 2. 17.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 이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기업이 공장 증설 시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17조제2항)

1) 현행: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

2) 변경: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22조

2)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1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2.~12.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내기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17조제2항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군비	115	100	100	100	100	515

3. 관련 의견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관내기업 지원: 2개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15백만원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3월 3일

거창군 규칙 제1308호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21-9

제출연월일	2021. 2. 17.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폐지이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2020. 11. 25.)함에 따라 폐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2.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1 - 4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3.

거 창 군 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응달길 85-12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1241-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응달길 85-12	20210303	20090401	길이 응달지역에 있어서 예로 부터 불려졌던 길이름에서 유래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11-4	20210303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338호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 공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2. 26.

거 창 군 수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고
1) 1,000천원 미만	9,000원	
2) 1,000 ~ 2,000천원 미만	11,000원	
3) 2,000 ~ 3,000천원 미만	13,000원	
4) 3,000 ~ 4,000천원 미만	16,000원	
5) 4,000 ~ 5,000천원 미만	20,000원	
6) 5,000 ~ 6,000천원 미만	24,000원	
7) 6,000 ~ 7,000천원 미만	28,000원	
8) 7,000 ~ 8,000천원 미만	32,000원	
9) 8,000 ~ 9,000천원 미만	35,000원	
10) 9,000 ~ 10,000천원 미만	40,000원	
11) 10,000 ~ 15,000천원 미만	56,000원	
12) 15,000 ~ 20,000천원 미만	73,000원	
13) 20,000 ~ 25,000천원 미만	94,000원	
14) 25,000 ~ 30,000천원 미만	111,000원	
15) 30,000 ~ 35,000천원 미만	136,000원	
16) 35,000 ~ 40,000천원 미만	156,000원	
17) 40,000 ~ 45,000천원 미만	166,000원	
18) 45,000천원 이상	179,000원	
	콩 정선 작업1,000원/40kg(포)	

○ 기타사항

- 공고내용과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55-940-8212)에 문의하시거나 거창군 홈페이지(hpp://.geochang.go.kr)현행자치법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339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명,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 조항을 분리하여 구체적이고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변경

1)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2)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위원회의 구성 조항 변경(안 제5조)

1) 현행) 부위원장만 규정

2) 변경) 위원장 및 간사 명시 (안 제5조)

다.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관한 조항 분리(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비용부담 조항에 승인에 관한 사항 포함

2) 변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승인 조항 및 비용부담 조항 분리

라. 조항 명칭 변경(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제13조(비용부담), 제14조(부담금의 징수)

2) 변경)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마. 조문 명칭 변경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2)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21. 2. 27. ~ 2021. 3. 19. / 20일간

7.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3. 19.(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산림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3483, FAX: 055)940-3459/8910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제5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피해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경우>	◦ **식재·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식재·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나. 군수가 식재·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식재·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 등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림 등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호 (생략)	**제10조(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호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호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림등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

	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등 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붙임 4]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의2 삭제 <2020. 6. 9.>[시행일 : 2021. 6. 10.] 제20조의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0. 6. 9.>[시행일 : 2021. 6. 10.] 제21조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관리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343호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

거 창 군 수

□ 사 업 명 :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 신청기간 : 2021. 3. 8.(월) ~ 3. 12.(월) 18:00 (5일간)

□ 지원대상 : 관내 항노화제품 생산 단체, 법인 등

□ 지원내용 : 2개소 / 개소당 25백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항노화 제품개발을 위한 효능검사료, 기능성 평가, 디자인 개발비용 등 지원

※ 디자인 개발·효능검사 등 연구비는 보조금(70%), 재료구입·시제품 생산비용은 자부담(30%) 집행
※ 보조금(70%)은 연구기관에 위탁·계약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에 따른 한시적 식품원료 인증 가능한 제품개발

□ 접수방법 : 산림과 항노화담당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40-3395)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항노화제품개발 현황 1부.
- 항노화제품 생산 단체 및 법인 증빙서류(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판매실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심사 ⇒ 보조금심의회 심의 ⇒ 대상자 확정

붙임 1.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항노화 제품개발현황 1부.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2021년 항노화 제품개발 지원사업
2. 사업신청자
   - ○ 단체명(대표자성명): (대표자:)
   - ○ 대표자 생년월일:
   - ○ 대표자 휴대전화:
   - ○ 대표자 주소:
3. 사업내용:
4. 사업기간: 2021년 월 ~ 2021년 월
5. 신청기본현황
   - ○ 기초 항노화 원재료:
   - ○ 제품:
6. 사업신청내역

세부사업내용	수 량	단 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위탁기관)
			계	보조	자부담	
계						

※ 디자인 개발·효능검사 등 연구비는 보조금(70%), 재료구입·시제품 생산비용은 자부담(30%) 집행

위와 같이 2021년도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제품개발 현황 1부.

2021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항노화 제품개발 현황

□ 사업신청 단체(법인) 현황

○ 단체(법인)명 :

○ 대표자명(생년월일) :

○ 단체(법인) 주소 :

○ 단체(법인) 주요 생산현황 / 재무제표 첨부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 생산 및 판매실적 :

□ 제품개발 시범사업 세부사항

○ 기초 항노화 원재료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에 따른 한시적 식품원료 인증 가능한 제품개발

○ 제품명 :

○ 주요효능 :

○ 제품개발 세부사항 (디자인 개발 사항 및 효능검사 관련사항 등)

-

○ 기타 제품 관련 소개 (자유롭게 기술)

-

-

-

◉거창군 공고 제2021 - 347호

공시송달 공고 『학동천 정비사업』

거창군에서 시행한 『학동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주소불명 등)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학동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일원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360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공고기간 : 2021. 3. 3. ~ 2021. 4. 2.(30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2021. 3. 3. ~ 2021. 4. 2.(30일간)

나.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개별 협의

다. 협의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라. 구비서류 : 붙임참조

마.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보상금 지급

※ 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 설정물건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후 청구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주소	성명
계	39 필지				8,284	4,697					
1	월계리	1016	1016-3	답	1,334	225		이태현			
2	월계리	1017	1017-2	답	1,130	4		전명용			

7.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 2021- 348호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일

거창군수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청년의 군정 참여의 창구로서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재정적 지원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1) 기능 :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등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청년시설 위탁근거, 재정지원 재량 확대(안 제19조)

○ 청년단체의 재정지원 재량 확대(안 제20조)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 인구교육과

○ 우편번호:51030, 전화: 055-940-8817, 팩스: 055-940-8709
이메일: rlove0228@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개정이유

청년의 군정 참여의 창구로서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재정적 지원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청년네트워크 신설(안 제13조의2)

1) 기능 :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등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청년시설 위탁근거, 재정지원 재량 확대(안 제19조)

다. 청년단체의 재정지원 재량 확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법」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청년네트워크 예산 5백만원 확보 및 청년정책 추진 지원사업 110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 ~ 2021. 3. 22.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 설치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의2(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청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청년시설 설치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9. 9. 26.] [조례 제4633호, 2019. 9. 26, 일부개정]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 ·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9.26.>

제10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본조신설 2019.9.26.>) ①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한 청년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 시설을 설치 · 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 관리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26>
1. 경상남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9.9.26.>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창군 공고 제 2021 - 3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고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2. ~ 2021. 3. 21.
3. 공고대상 : 57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1-353호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거창군민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조~제3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둘 것
- (지원기간) 휴학기간 최대 6학기 및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라.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중복지원 방지) 국가, 지자체, 법인, 단체 등 타 기관 기지원자 제외
- (지원 중단) 지원자격 미달, 고등교육기관 제적, 부적정한 사유 등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학사업 관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무 위탁 근거 마련

4. 예고기간 : 2021. 3. 2.(화) ~ 3. 22.(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3. 22.(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1) 주소 : (우 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인구교육과)

2) 전화 055-940-8812, 팩스 055-940-8905, 이메일 011time@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 【☎(055)940-8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1-

제출일자	2021. 3.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고등교육기관 진학 장려에 따른 지역인재양성 기반 조성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조~제3조)

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둘 것
- (지원기간) 휴학기간 최대 6학기 및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라. 중복지원 방지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중복지원 방지) 국가, 지자체, 법인, 단체 등 타 기관 기지원자 제외
- (지원 중단) 지원자격 미달, 고등교육기관 제적, 부적정한 사유 등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학사업 관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무 위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 5백만원 추경 편성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3. 2. ~ 3. 22.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3) 비용추계서 :

4) 성별영향분석 : 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방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354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 과를 신설·분리하고자 함.

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소 분과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10조)

나. 정원 조정(안 제25조)

1) 총수 증11명: 767명 → 778명

2) 집행기관 증11명: 753명 → 764명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1) 일반직 4급 정원 증1명

2) 일반직 4~5급 정원 감1명

3) 일반직 5급 정원 증1명

4)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9명

가) 현행: 690명(본청323, 의회11, 직속기관118, 사업소37, 읍41, 면160)

나) 조정: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5) 연구직(연구사) 정원 증1명

가) 현행: 5명(본청2, 직속기관2, 사업소1)

나) 조정: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4. 소요예산 : 21년도 추경예산 예산 513,000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7명”을 “7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53명”을 “764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7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53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8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64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소계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읍	면
총 계		778 ~~767~~	350 ~~346~~	14	157 ~~153~~	72 ~~69~~	85 ~~84~~	41	44 ~~42~~	172 ~~17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42 ~~732~~	344 ~~341~~	14	128 ~~124~~	43 ~~40~~	85 ~~84~~	40	44 ~~42~~	172 ~~171~~
	4급	4 ~~3~~	3		1 ~~0~~		1 ~~0~~			
	4~5급	1 ~~2~~			0 ~~1~~		0 ~~1~~		1	
	5급	38 ~~37~~	15	3	6 ~~5~~	4	2 ~~1~~	3		11
	6급 이하	699 ~~690~~	326 ~~323~~	11	121 ~~118~~	39 ~~36~~	82	37	43 ~~41~~	161 ~~16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5~~	3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35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점점 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정비로 보건소 과를 신설·분리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시책 및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과장, 보건소장·과장 신설 및 조정(안 제3조, 제4조)

1) 안전총괄과장

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나) 조정: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보건소장

가) 현행: 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나) 변경: 기술서기관

3) 보건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4)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

5) **남상면장**

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나) 변경: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나. 부서 분장사무 신설(안 별표3)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4급 정원 증1명(직속기관 : 기술서기관)**

2) **일반직 4~5급 정원 감1명**(직속기관 : 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3) **일반직 5급 정원 조정1명**(직속기관)

가) 현행 : 지방의무사무관

나) 조정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4) **일반직 5급 정원 증1명**(직속기관 :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

5) **일반직 7급 정원 증3명**

가) 직속기관 7급 정원 증2명: 행정1, 행정·농업1

나) 읍 7급 정원 증1명: 행정·사회복지1

6) **일반직 8급 정원 증3명**

가) 본청 8급 정원 증1명: 행정·녹지1

나) 직속기관 8급 정원 증1명: 행정·농업1

다) 읍 8급 정원 증1명: 행정·사회복지1

7) **일반직 9급 정원 증3명**

가) 본청 9급 정원 증2명: 행정1, 행정·시설1

나) 읍 9급 정원 증1명: 행정·사회복지1

8) **연구직 정원 증1명**

4. **소요예산 :** 21년도 증원 인력 예산 513,000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 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중 제5호 보건소 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② (생 략)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6. (생 략)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6. (현행과 같음)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1.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1.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업무 2. 군정시책 종합평가 업무 3.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업무 4. 공약사업과 지시, 현안사항 종합관리 업무 5. 군 의회 운영 협력·지원·조정 업무 6.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총괄 7. 적극행정 업무 총괄 8.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뉴딜정책 총괄 9. 군정종합 우수시책 대외 응모 10. 공보・홍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 11.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언론 보도내용 분석 관련 업무 12. 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 13.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브리핑룸 관리 업무 14. 언론 매체 관리에 관한 업무 15. 군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16. 지방채 등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업무 17. 예산사업의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1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지방공기업·경영수익사업 관한 업무 19.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 20.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21. 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22. 예산운용에 관한 업무 23. 감사계획의 수립·감사와 특정감사 등에 관한 업무 24.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25. 법규위반 비위공무원 조사·처분과 고충민원 처리 26.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업무와 면책·소청 심사 관련 업무 27.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 28.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훈령・예규에 관한 업무 29. 소송, 행정심판 관련 업무 30. 인구동태 조사와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1. 정책수립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행정통계에 관한 업무 32. 외국인 통계와 관리에 관한 업무 33. 규제 종합계획 수립과 규제개선에 관한 업무 34. 혁신업무 총괄 35. 그 밖에 기획, 공보, 예산, 성과, 감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업무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정과	1. 각종 행사・의전 총괄 업무 2. 공무원 인사・상훈・조직・교육에 관한 업무 3. 공무원 정・현원 관리,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정・현원 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업무 5. 지방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6. 군민화합・의식개혁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 7. 주요시책 추진 8. 일제강점 피해 관련 업무 9. 공무원 해외출장 등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10. 선거에 관한 업무 11. 서무, 공인관리, 보안에 관한 업무 12. 문서통제, 우편물 수발,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무원 보수·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14.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 15.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16.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7. 기록물 관리・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업무 1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19.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업무 20. 주민투표, 지방분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지방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21. 기관・단체 현황관리, 주요단체 등 대외협력・지원에 관한 업무 22. 군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3. 공통기반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 24.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25. 그 밖에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미래전략과	1. 현안·역점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공모사업 총괄 3.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4. 창업, 공장설립 승인 관련 업무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7.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업무 8.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관한 업무 9.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유관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업무 10. 투자 프로젝트사업 개발 관련 업무 11. 국내·외 기업, 산업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미래전략,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인구교육과	1. 인구정책업무 전반 2. 인구증가 종합계획 수립 3.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5. 청년정책 업무 총괄 6. 교육발전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 7. 인재육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8.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업무 9.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 1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 11.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12. 청소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3. 도서관 관리・운영 업무 14.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업무
민원소통과	1. 민원사무 접수・처리 부서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2. 민원업무연구,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 3. 창구민원 즉결 처리 관련 업무 4. 인터넷민원, G4C민원, 여권, 행정정보공개, 국민신문고 업무 5.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6.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업무 8.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업무 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업무 10.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업무 1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12.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업무 1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4.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 15.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 16. 공간정보 관련 업무 17. 식품접객업 관리 업무 18.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업무 19. 공중위생업 관리 업무 20. 위생면허 관리 업무 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22.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23. 도해지적 수치화 업무 24. 지적확정측량 업무 25. 그 밖에 민원, 지적, 토지정보, 위생, 지적 재조사에 관한 업무

재무과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 2. 세원발굴,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4.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 5.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에 관한 업무 6.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에 관한 업무 7. 세외수입 징수・지도, 체납징수 총괄 관리에 관한 업무 8. 세입금 관리와 결산에 관한 업무 9.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0. 국채와 지방채 소화에 관한 업무 11.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 12.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4. 물품구입, 출납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 15.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업무 16.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업무 17.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18.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1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업무 20. 그 밖에 부과,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 부동산평가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과	1.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예술 활동 지원 업무 2. 문화정책·문화시설·문화예술복지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4. 향교 및 종교단체의 지원 관리 5.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 6. 공연장, 공연에 관한 업무 7. 문화산업에 관한업무 8. 거창문화재단, 거창문화원에 관한 업무 9. 관광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업무 10. 거창한마당축제 관련 업무 11.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에 관한 업무 12.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13. 온천지구 지정, 개발관리 업무 14. 관광자원 개발 15.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6.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 17.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 18.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19.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 20. 수승대 운영에 관한 업무 21.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업무 22.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관광시설, 문화재, 박물관, 수승대에 관한 업무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2.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림1004운동 추진에 관한 업무 4.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리와 운영 5.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체 지원 9.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11. 복지대상자 신규・변경 신청 조사 12. 사회보장급여 자격 변동, 사후관리 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관리 15.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급여지원 16. 저소득층 복지지원 17. 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관리 18.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20.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기초생활에 관한 업무
행복나눔과	1. 노인복지 시설, 단체 관련 업무 2. 노인사회참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3.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전반 4. 장기요양관련 업무 전반 5.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6.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업무 7.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 8.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 9. 장애인자립, 사회참여활동 지원 10. 여성권익신장,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1.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2.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3. 보육료지원에 관한 업무 14. 어린이집 설치·인가·관리에 관한 업무 15.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16.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관한 업무 17.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업무 18.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업무 19.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0.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아동에 관한 업무

3. 경제산업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교통과	1.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육성 관련 업무 3.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업무 4.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5. 공산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 6. 통상진흥 관련 업무 7. 담배소매인 등록 관련 업무 8. 통신·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9.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 10. 노동단체관리 업무 11.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 12. 문화거리 활성화, 유지관리 관련 업무 13. 공예품, QC상품관리 관련 업무 14. 일자리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5. 채용박람회, 일자리안정자금 등 관련 업무 16. 전기, 석유, 가스, 수소 등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17. 태양광, 광업권 관련 업무 18. 교통안전 관련 업무 19. 교통질서 계도, 단속 관련 업무 20. 여객,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21. 여객운수업 재정지원 관련 업무 22. 그 밖에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총괄, 에너지, 교통에 관한 업무
안전총괄과	1. 지역안전,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평가 등 총괄에 관한 업무 2.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3. 재난상황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도선장 관리 업무 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대책수립 추진 업무 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9. 유관 기관단체 재난관련 협의 조정 업무 10. 재해영향성평가 업무 11.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업무 12.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안전점검·관리업무 13. 방재 전산훈련 업무 14. 안전문화운동 전개, 교육 홍보 업무 15.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관련 업무 16.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운영관련 업무 17. 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 1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19.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업무 20.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업무 21. CCTV관제에 관한 업무 22. 행정통신망,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23. 그 밖에 안전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관제에 관한 업무
산림과	1. 산림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 3. 토석・토사 채취 허가 관련 업무 4. 양묘, 조림사업, 사방사업 관련 업무 5. 단기임산물 관련 업무 6. 산지소득, 임업단체 관련 업무 7. 화강석 특화 육성 관련 업무 8. 보안림 지정・해제 관련 업무 9. 산지전용허가, 변경 관련 업무 10.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사범 관련 업무 11. 불법 산림훼손에 관한 업무 12.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13. 임도시설 관리 관련 업무 14.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 15. 제재소 지도・감독 관련 업무 16. 산불예방, 진화 관련 업무 17.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및 보호 관련 업무 18. 도시공원·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9.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 업무 20. 푸른 거창가꾸기 관한 업무(푸른경남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21. 녹지공간 조성・관리 업무 22. 꽃길・꽃동산 조성・관리 업무 23. 항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24. 항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 25.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26. 산림 내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 27. 치유의 숲, 등산로(숲길) 조성・관리 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29.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관련 업무 30.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총괄 31.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총괄 32. 힐링랜드 야외시설 운영 관리 업무 33. 그 밖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항노화, 산림레포츠파크, 항노화힐링랜드에 관한 업무

환경과	1. 환경기본계획, 환경정책에 관한 업무 2. 대기, 소음·진동, 토양, 악취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3.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4.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5. 탄소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사범 수사 7. 미세먼지 감축 추진 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소각시설 위탁 운영 관리 10. 생활·건설·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11.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련 업무 12.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관리 13. 영농폐기물(집하장 등) 시설물 설치・관리 14. 수질보전, 수질개선 업무 추진 15.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16.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18.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19.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 2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자연보호 업무추진 21. 야생 동·식물 관리 및 보호 22. 생태습지원, 생태공원 관리 2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관리업무 추진 24. 창포원, 국화원, 연꽃수련원 등 수변생태공원 관리 25. 방문자센터, 온실 등 유지 관리 26.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27. 그 밖에 환경정책, 자원순환, 수질관리, 자연환경, 창포원에 관한 업무
건설과	1. 건설업 관리 업무 2.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업무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업무 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업무 5. 보상에 관한 업무 6. 건설기계 관리감독 관련 업무 7. 농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 업무 8. 농업용수개발, 개·보수사업 추진 업무 9.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10. 농업기반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개 개선 업무 11.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12. 한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업무 13. 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14. 하천공사 시행관련 업무 15. 하천의 개량·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16.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업무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행 업무 18.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19. 도로굴착 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업무 20. 교량 유지, 사도관리에 관한 업무 21. 과적차량 단속 업무 22. 그 밖에 건설, 농업기반, 하천, 도로에 관한 업무
도시건축과	1.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의 입안과 시행 관련 업무 2. 군계획시설 사업 관련 업무 3. 개발행위 허가・협의, 불법개발행위 관련 업무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 업무 5.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6.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관련 업무 7. 군계획구역내 도시정비 관련 업무 8.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업무 9.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 관련 업무 10.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관련 업무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관련 업무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 관련 업무 13.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14. 주거 급여 관련 업무 15.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업무 1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17. 농지전용협의・허가, 용도변경 관련 업무 18.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19.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업무 2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1.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협의체 등 운영 관련 업무 2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도시경관 계획 관련 업무 23. 친환경 녹색 건축물 사업 추진 관련 업무 24.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행정, 건축민원에 관한 업무

4.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인사・복무・회계・예산 운영 관련 업무 2. 농정시책 및 사업의 확인, 심사, 분석, 평가 3. 물품과 재산 관리 업무 4. 농업・농촌발전 대책 관련 업무 5. 농지보존,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6. 농림사업 계획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관련 업무 7. 농산물 대축제 관련 업무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9. 수입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0. 자유무역협정 농・수・축산업 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관련 업무 11.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종합대책 관련 업무 12. 농업발전기금, 진흥기금 관련 업무 13. 강소농과 농업경영개선 지원 업무 14. 지도・연구공무원 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 15.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 16. 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17.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관련 업무 18. 농업인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관련 업무 19.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업무 20.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관련 업무 21. 후계 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관리 업무 22.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 23. 축산물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사업 관련 업무 24. 축산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25. 가축개량 및 송아지 생산 관련 업무 26.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업무 27. 내수면 어업, 수산물 관련 업무 28. 축산 재해, 생산이력제 사업 관련 업무 29. 친환경축산, 축산분뇨 처리 관련 업무 30. 경관보전직불 업무 31. 가축방역 대책,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 32. 도축장 시설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업무 33.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34. 공수의 관리, 동물병원・약국 관리 관련 업무 35. 축산물 판매・유통 대책 관련 업무 36.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산 시범사업 관련 업무 37.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 38. 그 밖에 농정, 농업지원, 축산, 가축방역, 농기계에 관한 업무
농업기술과	1.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 2. 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관련 업무 3. 식량작물 보급종 공급, 채종단지 운영 관련 업무 4.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 5. 농약・비료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6. 농촌일손 돕기, 농업재해 업무 7. 정부 양곡관리 관련 업무 8. 원예, 특작분야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관련 업무 9. 원예 특작 적정 생산 계획, 기술지도 업무 10. 종자산업법 관련 업무 11. 특화작목 육성, 시설물 재해대책 관련 업무 12. 잠업 생산 지원 및 실증시험 업무 13. 과수재배 기술보급・지원 관련 업무 14.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관련 업무 15. 사과테마파크, 사과이용체험센터 관리운영 업무 16. 농작물 재해보험, 거창명품사과 홍보 관련 업무 17. 과수 시범사업,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18.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업무 19.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및 관원관리 IPM사업 업무 20.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21.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산물 직불금 관련 업무 2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 관련 업무 23. 친환경 비료 지원에 관한 업무 24.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련 업무 25. 천적생태과학관 관련 업무 26. 실증시범포 운영 관련 업무 27. 조직 배양실 운영 관련 업무 28.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정밀 검정에 관한 업무 29.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업무 30. 그 밖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업무

행복농촌과	1. 행복농촌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2.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역량강화 교육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4.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과 법령・제도 개선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공모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사후유지 관리 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8.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9.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업무 10.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11.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관련 업무 12. 산지유통시설 관련 업무 13. 산지유통・통합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14.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관련 업무 15. 농산물공동브랜드(거창韓) 육성・지원 관련 업무 1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지원 업무 17. 농산물 물류 표준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업무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19.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지원센터 운영 20.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업무 2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업무 22. 향토음식, 전통주 육성 관련 업무 23. 귀농・귀촌 관련 업무 24. 귀농귀촌인 상담센터 운영 25.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관련 업무 26.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관련 업무 27. 농촌체험 및 사이버농원 육성・지원 관련 업무 28. 거창푸드플랜 수립·시행 2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0.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 31.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관리 32.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업무 33. 농산물직거래 장터, 거창군 쇼핑몰 관련 업무 34. 그 밖에 농촌진흥, 농촌개발, 수출유통, 농촌융복합, 귀농귀촌, 지역식품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보건정책과	1.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4. 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 5. 보건복지 및 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시행 6.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9. 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업무 10.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11. 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 12. 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13.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관리 14. 각종 생활방역에 관한 업무 15.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의료업소 등에 관한 사항 17.「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8.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19. 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20. 공공의약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모자보건 사업 23. 민원실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24. 각종 건강검진 업무 25.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4.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5.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6.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7.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8.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 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ICT활용 원격의료) 12.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13. 정신의료기관 관리 14.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5.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7. 건강주치의제 운영 18.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 구강보건사업(학교 포함) 21.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24. 방문건강관리 사업 25.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6. 치매안심센터 운영 27.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8. 그 밖의 건강증진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소

부서	분장사무
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상・하수도・하수처리장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관한 업무 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6.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9. 취·정수장 운영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 사업소	1. 체육진흥 종합 기획·조정 2. 체육단체 육성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업, 수상레저사업 지도 관리 4. 골프장 개발 관리 5. 스포츠파크 총괄 운영 관리 6. 체육시설 유지·관리, 개발에 관한 사무 7. 읍면 체육시설(운동기구) 총괄 관리 8.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9.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10. 체육지도자, 시설전문관리인 채용 및 운영 관리 1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2.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13.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4.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업무
거창사건 사업소	1. 거창사건사업소 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위령제, 추모식 등 각종 문화행사 기획운영 3. 거창사건사업소 시설물 유지 관리 4. 국화전시회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거창사건에 관한 업무

6. 읍・면

부서	분장사무
읍・면	1. 행정리 지도 관련 업무 2. 선거 및 통계 관련 업무 3. 세입징수 및 독려 관련 업무 4. 세원조사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7. 민방위 관련 업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업무 9.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 관련 업무

	1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11. 농업, 축산, 산림, 경제 관련 업무 12. 소규모 주민사업 관련 업무 13. 광고물 관리 업무 14. 재난·재해 관련 업무 15.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16. 그 밖에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

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7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53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